

## 제 1 조 적용범위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## 제 2 조 목적

이 규정은 (본 회사의)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3 조 일반사항

### 3.1 구성

-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
### 3.2 의장

-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
-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3.3 소집

- 정기 이사회는 1 월, 2 월, 4 월, 7 월, 10 월, 12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대표이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 전일까지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3.4 제안 및 의사

- 이사회 의제는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발의한다.
-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그 취지를 대표이사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3.5 긴급사항

-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대표이사가 이사 2/3 이상 동의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전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단,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 전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일정을 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3.6 부의절차

-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소집요청서(서식)와 부의 안건(제안설명)내용을 담당이사 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 주관부서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주관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의안을 명시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3.7 의안설명

의안의 제안설명은 당해 의안의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상세한 설명을 당실무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.

### 3.8 결의방법

가.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서 하여야 한다.

나. 이사 및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이사 및 감사가 음성으로 동시에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.

다.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라. 전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3.9 감사의 출석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
### 3.10 이사회 참여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해당업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.

### 3.11 의사록 등의 작성

가. 이사회 주관부서장은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나. 출석한 이사 및 감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다.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, 당해 업무 소관부서는 부분을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3.12 부의사항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# 3.12.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1) 주주총회의 소집
- 2)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- 3) 정관의 변경
- 4) 자본의 감소
- 5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
- 6) 주식 배당 결정
- 7)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또는 취소
- 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

### 3.12.2 경영에 관한 사항

- 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결정 및 변경
- 2) 전략적 제휴 및 신규 사업 진출
- 3) 해산, 영업의 양도, 양수,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- 4) 대표이사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5)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후보의 주주총회에의 추천
- 6)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 보수의 결정
- 7)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
- 8) 비등기임원의 주요직책(이사가 아닌 재무 담당임원) 임명 승인
- 9) 비등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

### 3.12.3 재무에 관한 사항

- 1) 주식의 발행, 매입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
- 2) 사채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및 그 상환
- 3) 중요한 투자결정 및 계약체결 (건당 자본금의 10% 이상)
- 4) 중요한 재산의 취득, 처분, 저당권 또는 질권설정 (건당 자본금의 10% 이상)
- 5) 비유동자산의 담보제공, 출자회사 담보, 보증 등 채무인수 및 기타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는 사항
- 6) 중대한 결손처분 (건당 4 억원 초과)

### 3.12.4 기타

- 1)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상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
- 2) 법령, 정관,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
  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
  -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주요경영사항 등 (대표이사 결정 사항 제외)
  -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
- 3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4) 기부금 출연 (건당 1 천만원 초과)
- 5)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
- 6) 이사회 규정, 내부회계관리지침 제정 및 개폐
- 7) 사외이사의 경비 지급(이사회 업무관련 자료 및 정보조사 비용, 참석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)

### 3.13 간사

가. 이사회에는 간사를 둔다.

나. 간사는 이사회 업무 주관부서장이 되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